

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(제30호) 안내

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-65호
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,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05. 6. 20.
 산업자원부장관

1. 신기술명 : 송전선로 개선공사용 활차형 런닝보드

- 지정번호 : 제 30호
- 신기술개발자
 - 회 사 명 : 대우건설(주)
 - 대 표 자 : 박세흠
 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2137895
 - 주 소 :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
 - 전화번호 : 02-2288-3652
- 신기술 내용 및 범위
 - 활차, 런닝보드, 슬링와이어를 포함한 런닝보드 장치
- 신기술 보호기간 : 지정·고시일로부터 5년

2. 신기술 보호내용

-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
 -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
 -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,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3.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(02-2274-1661~5)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